

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

(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관련)

시 험 의 종 류		기준등급
한국사능력검정시험	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(한국사능력검정시험)을 말한다.	2급 이상

비 고 :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 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. 이 경우, 그 소명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